Global Business Report 09-032
2009. 09. 03

심층 분석, 러시아의 인증제도

-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도와 향후 전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인증제도 개관 / 3

Ⅱ. 인증의 종류와 대상 / 7

7 1. 강제 여부에 따라

9 2. 수출 횟수에 따라

10 3. 추가 인증

Ⅲ. 인증절차 및 발급기간 / 14

Ⅳ. 인증취득 시 유의사항 / 17

Ⅴ.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 19

19 1.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도

20 2. 인증제도의 향후 전망

Ⅵ. 성공 및 실패 사례 / 22

요 약

건강, 안전, 위생, 환경 등이 각국의 정책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안전기준에 대한 부합 여부를 증명해 주는 인증제도가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러시아도 GOST-R이라고 불리는 국가 인증제도를 마련해 놓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인증제도는 강제 여부에 따라, 자율인증과 강제인증으로 구분된다. ▶ **자율인증은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위해 사용**되며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수행된다. 수입업체 또는 무역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품질이 러시아 정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경쟁제품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 **강제인증은 러시아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 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비 등에 적용된다. 수출 제품이 강제인증 대상 제품인 경우, 인증서가 있어야 러시아 통관이 가능하며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러시아의 국가 인증제도는 또한, 수출 횟수에 따라, ▶ **단발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에 사용되는 **단일 선적인증**과 ▶ **수출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사용되는 **연속 생산인증**으로 구분된다. 단일 선적인증에 비해 연속 생산인증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러시아 시장에 정기적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샘플 검사로 인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

제품에 따라, GOST-R 인증 외에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추가 인증에는 위생 인증, 화재방지 인증, GOST-R 방폭 인증, 건설 인증, 보건복지부 인증, 운송기기 허가, RTN 위험물 사용 허가, 계측기기 사용 허가 등이 있다. 각 인증마다 대상품목과 인증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증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의 국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러시아의 제품분류 기준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 **인증비용 부담조건에 대해 바이어와 사전에 합의**하며, ▶ **인증신청 전에 인증기관의 라이센스, 유효기간 및 인가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국가 인증제도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약 50만 개의 현행 국가규격(GOST-R)이 2011년까지 1,000여 개의 기술규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WTO 가입을 위해 국제관행과 WTO 기준에 맞게 기술규정을 수정하고 있다. 2009년에도 ▶ **우유 및 유제품에 관한 기술규정**, ▶ **야채 및 과일 주스에 관한 기술규정**, ▶ **담배 제품에 관한 기술규정**,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상품안전 기술규정** 등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 밖에 20개 이상의 새로운 인증규정이 제정 중에 있다.

러시아는 국가 인증제도를 주로 서방(특히, EU)으로부터 도입하였으나, 러시아 내에서의 안전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테스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인증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국가 인증제도는 러시아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러시아의 국가 인증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수출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I. 인증제도 개관

□ 인증제도(GOST-R)

○ GOST란 러시아어로 국가 규격이라는 ГОСТ(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стандарт-Government Standard)의 영어 표기이며 R은 Russia를 줄인 말

○ GOST-R은 러시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제품이 러시아의 국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증명하는, 오늘날 러시아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증

○ 주요 용도

- GOST-R 인증서를 제출하여야만 러시아 세관 통관 가능
- 러시아 내에서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필수 법적 요건
- 감독당국의 사후 검사 시 적발에 대응하는데 반드시 필요
- 미인증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 요소로 작용
- 인증이 면제되는 제품도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소비자의 신뢰와 인식이 제고되어 마케팅 활동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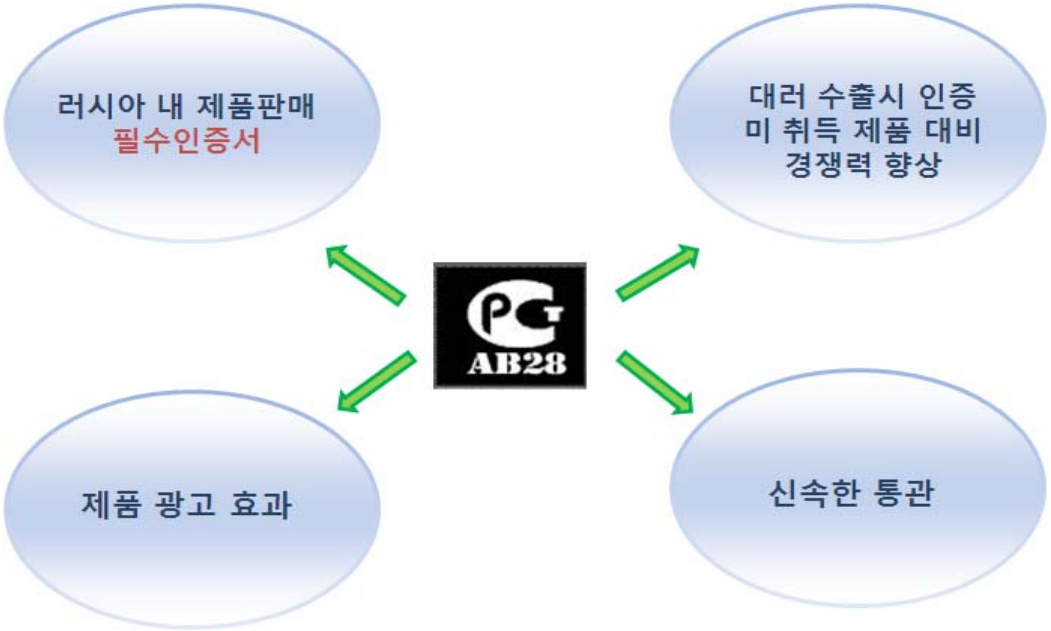

○ 관련 법규

- 소비자 권익 및 환경 보호법(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the consumers and the environment)
- 재화 및 용역의 인증에 관한 연방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cer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 측정 합의의 보장에 관한 법률(Law on ensuring unanimity of measurement)

[GOST-R 인증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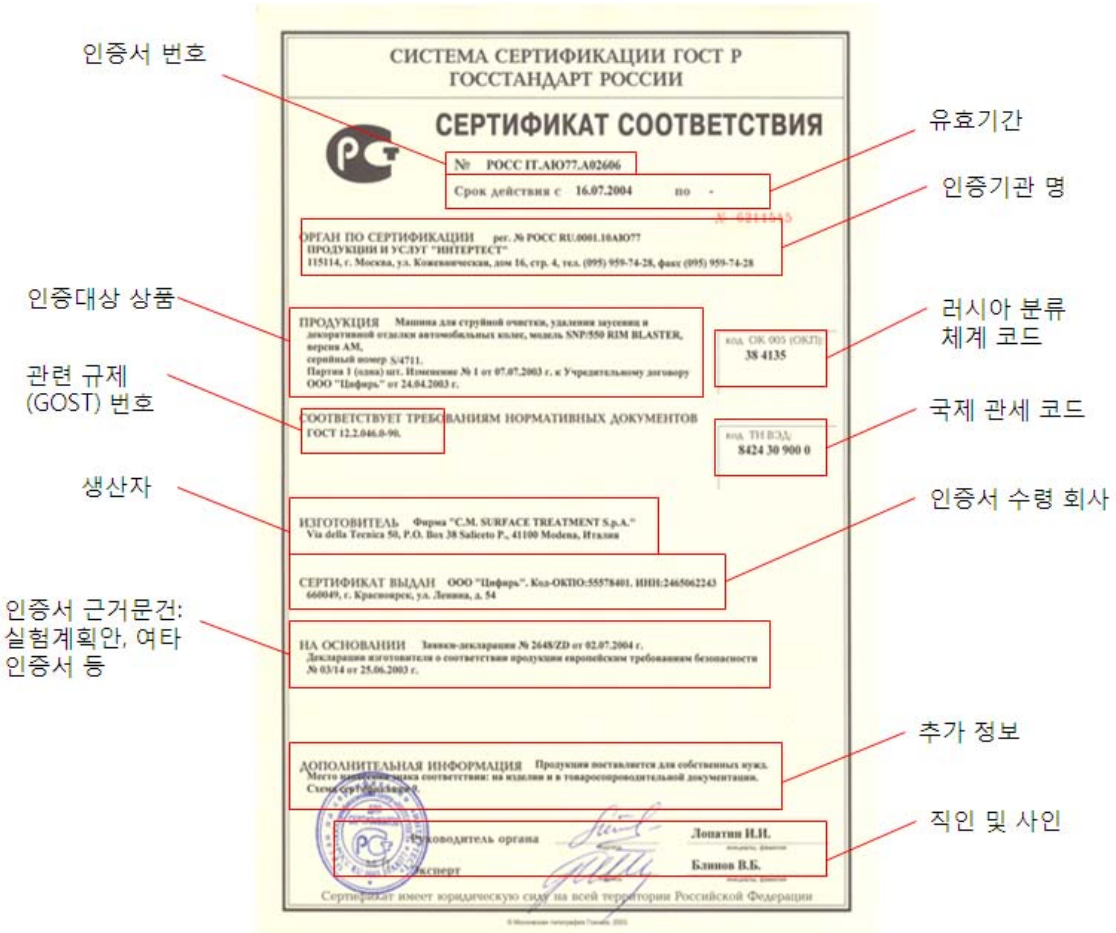

□ 주관기관

○ 1925년 설립된 러시아 연방 표준위원회(Gosstandard)가 주관 기관으로, 2004년 대통령령 314호에 의거, 러시아 연방 기술 조정 및 도량 기관(Feda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으로 명칭 변경

구 분	내 용
기관명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주 소	Russia, 119991, GSP-1, B-49, Moscow, Leninsky Prospect ave., 9
전 화	(7-495) 236-0300
팩 스	(7-495) 236-6231, 237-6032
이메일	info@gost.ru, sekelkin@gost.ru
웹사이트	Http://www.gost.ru
기관장	Mr. Elkin Grigory Iosifovich
담당국장	Head of the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Department : Mr. Klyushnikov Victor Nikolayevich (Tel : 7-495-236-6176 E-mail : Stand@gost.ru)

○ 주요 기능

- 재화, 용역, 품질 시스템 및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의 인증에 대한 일반 규정 제정
- 강제 또는 자율 인증제도와 인증마크의 정부 등록 시행
- 인증 규정과 인증 제품에 대한 감독
- 전문가, 경제주체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증결과 공포

○ 인증 관련 주요 서비스

- 인증 기관과 테스트 실험실(센터)의 인가 및 관련자료 보관
- 인증 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련자료 보관
- 인증 등록 및 관련자료 보관
- 품질 제도와 생산에 대한 인증을 취득한 기업 관련자료 보관
- 인증과 테스트의 조직적·방법론적 기반의 형성 지원
- 동질 제품과 서비스 등의 인증제도 개발

□ 우리나라 소재 관련 검사/시험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152-848)
- 전 화 : 02-860-1114(대표전화)
- 홈페이지 : www.ktl.re.kr

○ 인증대행 기관

- 세르콘스 코리아(Sercons Korea) http://www.sercons.co.kr
- 씨티알 파이스트(주)(CTR Far East) http://www.kr.sgs.com

□ 인증 미취득 시 제재사항

○ 강제인증 대상 제품이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

○ 인증 취득 후 규격미달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에 10일 이내 시정 조치

○ 해당 기업이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제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으며, 법적책임 부과

○ 법원에서 제품환수 판결을 내리면 해당 기업은 환수기한 내에 제품을 모두 수거

○ 법원판결 이후 한 달 이내에 소비자들에게 제품환수 사실 공지

○ 해당 기업이 기한 내에 제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에서 제품환수 조치를 내리며, 해당 기업이 관련 비용을 부담

II. 인증의 종류와 대상

1. 강제 여부에 따라

□ 자율인증

○ 강제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인증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인증을 위해 사용되며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수행

○ 법에 의해 인증발급 허가를 받은 모든 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일부 기관은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모두 취급

○ 현재 약 65개의 기관이 러시아 연방 기술 조정 및 도량 기관으로부터 자율인증 발급 권한을 수임

○ 수입업체 또는 무역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이 러시아 정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경쟁제품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주로 사용

□ 강제인증

○ 강제인증 대상 재화 및 용역은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해당 제품이 갱신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 버전을 확인 필요

- 강제인증 대상 재화 및 용역 리스트는 1997년 8월 13일 러시아 연방 정부 결의안 제 1013호에 의해 처음 제정
- 이후 수차례 리스트가 갱신되어 2009년 4월 29일 정부 결의안 제 370호에 최근 수정안이 포함

○ 리스트는 인증제품에 대한 공식 자료로, 재화 및 용역의 명칭과 러시아의 제품분류 방식에 의한 품목 코드, 강제인증 발급 시 요구사항 등이 포함

○ 강제인증 대상품목

- 소비자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재화, 용역 및 도구 등
  (예 : 식음료, 의약품, 섬유, 전기도구, 관련장비 등)
- 에너지 소비제품과 에너지 자원
- 가스와 석탄
- 통신시설, 도구 및 서비스
- 정보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도구
- 운송수단, 제품 및 서비스
- 우주항공 장비
- 알콜제품과 생산 장비
- 생산장소
- 위험스러운 생산장소에 설치된 기술장비
  (예 : 압력기, 리프팅 및 호이스팅 기계, 펌프, 광산, 석유가스, 야금 및 기타 산업관련 장비)
- 화재관련 제품
- 가축류
- 동물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제품(예 : 사료, 백신 등)
- 살충제 및 화학비료
- 유전자 변형결과를 포함하는 재화와 용역
- 측지학, 지도제작, 지형학 관련제품
- 삼림(임업) 관련 원료
- 원자력 산업관련 제품과 기술
- 무기관련 제품

○ 강제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

- 개인 사용 및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제품
- 외국정부기관과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제품
- 기반입 설비에 대한 수리 및 대체 부품
-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반입되는 물품
- 중고제품

2. 수출 횟수에 따라

□ 단일 선적인증(일회성 수출 인증)

○ 단발적으로 수출할 경우

- 특정 물품의 정해진 수량에 대해 인증

○ 수출업체가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로 러시아에 고객(수입업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연속 생산인증(연속성 수출 인증)

○ 수출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 정해진 기간 동안 선적 횟수와 수량에 상관없이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인증서가 발급된 이후 러시아 기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가받은 인증기관에서 연간 검사

3. 추가 인증[1)]

□ 위생 인증(Hygienic Certificate)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ЧЕЛОВЕКА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ЧЕЛОВЕКА ПО ГОРОДУ МОСКВЕ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Е ЗАКЛЮЧЕНИЕ

№ 77.01.16.490.П.042221.05.08 от 29.05.2008

○ 식품, 잡화, 조리기기, 건축자재 등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

○ GOST-R 인증을 취득하기 이전 필수 인증 (유효기간 : 1년, 5년)

○ 대상품목 : 식료품, 식료품 생산 및 가공 설비, 냉장고, 모니터, 전자레인지, TV, 교육용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 제품, 화장품, 완구류, 정수처리기, 건축재료, 가구 등

○ 승인기관 :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복지 감시청(Rospotrebnadzor)

□ 화재방지 인증(Fire Safety Certificate)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обязательная сертификация)

№ C-KR.ПБ24.В.00214 ТР 0624256

○ 각종 화기 및 관련기기가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부터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

○ GOST-R 인증을 취득하기 이전 필수 인증(유효기간 : 단일선적 인증, 1년, 3년)

○ 대상품목 : 소화장비 및 시스템, 전기제품 (냉장고, 전선류 등), 가연성 건축자재 및 구조물(벽지, 바닥타일, 카펫 등), 합성제품(페인트, 신나, 도료 등), 온열 기계류(가스오븐, 온열기)

○ 승인기관 : 러시아 비상사태부(MChS)

□ GOST-R 방폭 인증

1) 특정 제품에 대해 GOST-R 인증을 받기 전에 추가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협조: Sercons Korea)

○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용되는 전기 기기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인증서
(유효기간 : 단일 선적 인증, 1년, 3년)

СИСТЕМА СЕРТИФИКАЦИИ ГОСТ Р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 대상품목 : 전력의 생성, 전송, 배분, 저장, 측정, 통제, 변환, 소비 관련기기, 전기통신기기, 방폭등기구, 방폭모터, 방폭히터, 폭발 위험지역(예 : 가스 터미널, 자동차 도장 공장 등)에서 점화의 원인이 되는 기기

○ 승인기관 : 러시아 연방 기술 조정 및 도량 기관(Feda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 건설 인증(Gosstroy Certificate)

СИСТЕМА СЕРТИФИКАЦИИ ГОСТ Р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ГОССТРОЙ РОССИИ

○ 건축자재에 대해 해당 제품이 인체 및 환경과 관련하여 GOST 규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한 안전성 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서

○ 건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증명서, 화재 증명서를 먼저 발급(유효기간 : 단일 선적 인증, 1년, 3년)

○ 대상품목 : 창문 구조물(PVC, 목재, 알루미늄), 발코니 도어, 시멘트, 건축 구조물

○ 승인기관 : 러시아 연방 기술 조정 및 도량 기관(Feda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 보건복지부 인증(허가)
(Certificate of Ministry)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FEDERAL SERVICE OF HEALTH CARE AND SOCIAL DEVELOPMENT CONTROL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REGISTRATION CERTIFICATE
ФС № 2006/315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НЕСЕНО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ЕСТР
ИЗДЕЛИЙ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ОЙ ТЕХНИКИ

○ 의료기기 및 의료용 목적으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의약품, 의료용 장비 및 보호장비, 의료용 원료 등)에 대한 인증 허가서

○ 통관 및 국내 판매를 위해 필수

○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후에 위생인증 및 GOST-R 인증 발급 가능
(유효기간 : 의약품은 5년, 의료기기는 10년)

○ 대상품목 : 러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의약제품, 의료기기

○ 승인기관 : 러시아 연방 보건 및 사회발전 감시청(Roszdravnadzor)

□ 운송기기 허가(Approval of Vehicle)

СИСТЕМА СЕРТИФИКАЦИИ ГОСТ Р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И МЕТРОЛОГИИ
ОДОБРЕНИЕ ТИПА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РЕДСТВА
№ РОСС RU.МТ22.Е04156

○ 자동차 및 운송기기(40Km/h)에 대한 교통부의 허가서

○ 러시아 연방 도로 교통법 및 운송기기 허가법에 의거, 발급되며 운송기기의 타입과 유해물질 배출 환경 등급 및 기준이 필수적으로 명시(유효기간 : 3년)

○ 대상품목 : 자동차 및 운송기기(승용차, 트럭, 펌프카, 믹서카 등)

○ 승인기관 : 러시아 연방 기술 조정 및 도량 기관(Feda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 RTN 위험물 사용 허가 (RTN Permit to Use)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ЭКОЛОГИЧЕСКОМУ,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И АТОМНОМУ НАДЗОРУ

РАЗРЕШЕНИЕ

№ РРС 00-29826

○ '유해 산업시설의 안전에 관한 연방법' No.116-FZ에 의거,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거나 폭발위험 등을 내재한물품 및 장비들에 대한 허가서

○ 동 인증 없이는 러시아 내에서 어떤 장비 및 물품도 설치·이용 불가
(유효기간 : 단일 선적 인증, 5년)

○ 대상품목 : 10톤 이상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 승강기, 리프트, 0.7 Kgf/㎠ 이상의 압력이나 115℃이상의 온도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컴프레서, 산업용 보일러, 가스장비 등 특별히 큰 위험이 내재된 제품

○ 승인기관 : 환경, 기술 및 원자력 감독청(Rostekhnadzor)

○ Technical Passport

- RTN Permit to Use 및 제품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러시아어로 작성)
- 장비의 설치 및 운전 요령 등 장비 전체 리스트, 시험성적서, 안전수칙 등을 RTN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

□ 계측기기 사용 허가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И МЕТРОЛОГИИ

СЕРТИФИКАТ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типа средств измерений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S

○ 러시아의 표준과 기준에 부하하는 측정기기임을 증명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인증서

○ RTN과 GOST-R 인증을 받기 전에 발급
(유효기간 : 단일 선적 인증, 1년, 3년)

○ 대상품목 : 계측기기류(유량계, 열 감지기, 압력계, 센서, 저울 등)

○ 승인기관 : 환경, 기술 및 원자력 감독청(Rostekhnadzor)

III. 인증절차 및 발급기간

□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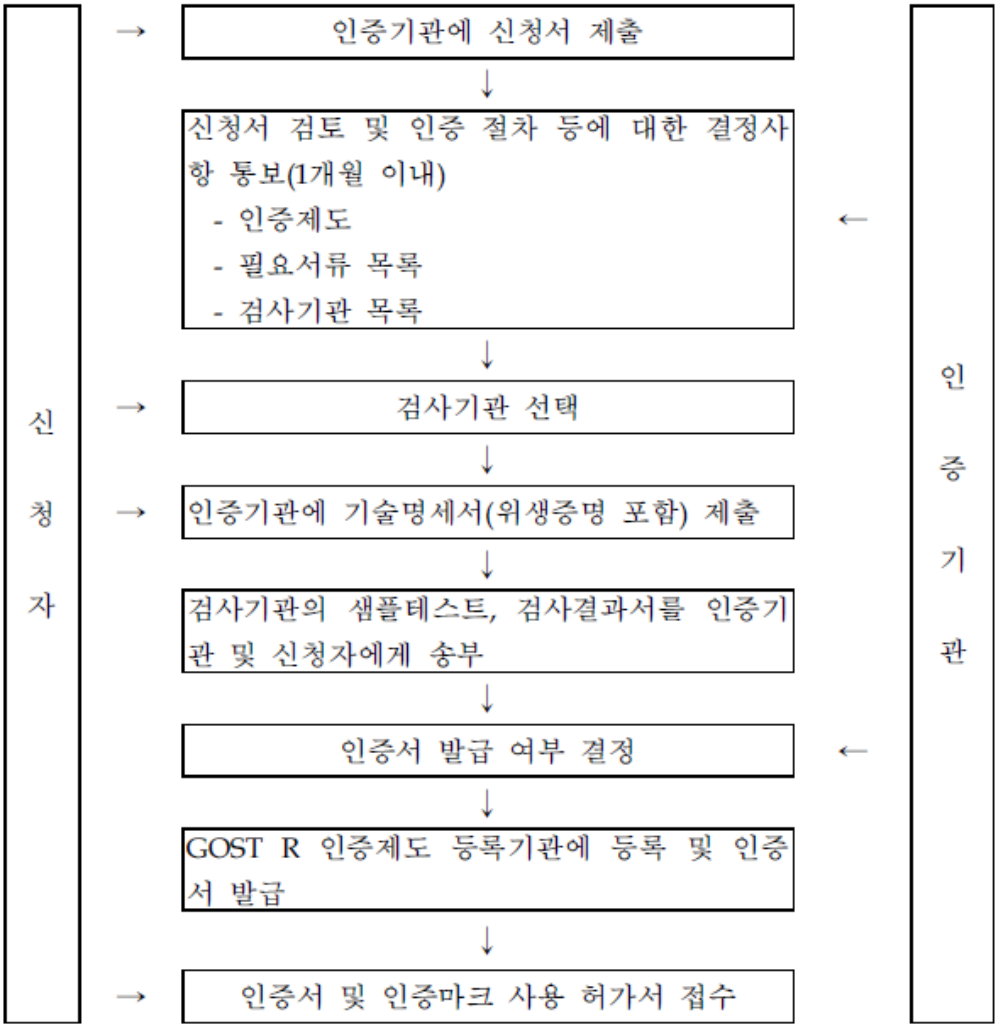

○ 신청자는 관련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인증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러시아 연방 기술 조정 및 도량 기관에 제출

○ 접수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1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인증 제도, 인증절차, 제출해야 하는 기술문서 목록 및 테스트 실험실(센터) 목록 등 인증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 신청자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품 샘플과 관련 기술 자료를 선정한 검사기관으로 제출

○ 검사기관에서는 샘플 확인 및 테스트를 하며, 제품이 규격에 부합할 경우, 테스트 결과 관련 문서를 인증기관과 신청자에게 송부

○ 필요할 경우, 생산인증(또는 품질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반영

* 평가 절차에는 공장의 감사와 기술서류의 평가, 감독관 방문, 샘플링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도 포함

○ 테스트 결과 제품이 규격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품은 GOST 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증취득 제품 목록에 등재되며,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송부

○ 제품 제조업체(판매자)는 제품이나 제품포장에 인증 라벨을 붙여야 하며, 라벨을 붙이는 권한은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라이센스에 표기

○ 이미 인증받은 제품의 검사 감독은 인증과 라이센스의 유효기간 내에 최소한 일년에 한차례 정도 시행

□ GOST-R 인증

○ 단일선적 인증

- 인증절차 : 서류 제출 → 인증서 발급
- 발급기간 : 서류 제출 후 1주일

○ 연속생산 인증

- 인증절차 : 서류 제출 → (필요시) 샘플 테스트/공장 심사 → 인증서 발급
- 발급기간 : 10 ~ 15일

○ GOST Mark 법 50460-92(Confirmity mark for obligatory certification form, sizes and the technical requirements)에 의거, 인증 취득시 상품과 제품 포장에 GOST-R 마크 인쇄 가능

[GOST-R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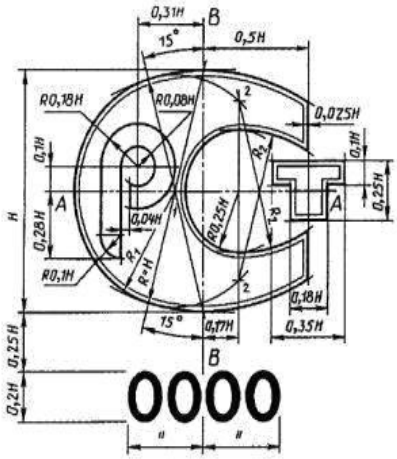

*** 마크 아래에는 인증기관 고유의 번호 표기(예 – Sercons 번호 : AB28)**

□ 위생 인증

○ 인증절차 : 서류 제출 → (필요시)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

○ 발급기간 : 5 ~ 30일

□ 화재방지 인증

○ 인증절차 : 서류 제출 → 샘플 테스트 → (필요시) 공장심사 →인증서 발급

○ 발급기간 : 평균 45일

□ GOST-R 방폭 인증

○ 인증절차 : 서류 제출 → (필요시)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

○ 발급기간 : 평균 45일

* 이 외 나머지 인증들 또한 위의 인증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취득

IV. 인증취득 시 유의사항

□ 인증신청 시 철저한 사전자료 준비

○ 러시아의 제품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러시아 인증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사전 준비사항 중 하나인데, 국내에서 직접 인증 관련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적합한 인증대행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

□ 인증비용에 대한 부담조건 확정

○ 바이어와의 가격협상 시 미리 인증비용에 대한 언급을 하여, 가격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필요

○ 각종 입찰에 응할 경우에도 인증비용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

○ 수출자와 수입자 간 어느 쪽에서 인증을 받을 것인가도 중요한 선택사항인데,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수출자의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은 있으나 인증만료 기간까지 수입자가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

○ 러시아 거래선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

□ 인증기관의 인증 라이센스 확인

○ 인증진행 전에 인증기관의 인증 라이센스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

○ 인증 라이센스에 명시된 인증기관 명칭과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무자격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는 러시아 세관과 러시아 연방기술 조정 및 도량 기관 검사에 적발 시 인증서 자격상실은 물론, 물품 전량 폐기처분 또는 반입금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 상존

□ 인증기관의 인가범위 검토

○ 인증기관별로 인가범위가 상이(예를 들어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인가를 받은 기관은 타 제품에 대한 인증이 불가능)

○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가범위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

V.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1.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도

□ 우유 및 유제품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연방법

○ 도입시기 : 2009년 12월 19일부터 발효

○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규정 명시

- 우유 및 유제품 : 비가공 및 가공 우유, 크림,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분유 등

- 대상 제품의 정의, 명칭, 성분, 포장 등에 대해 규정

□ 야채 및 과일 주스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연방법

○ 도입시기 : 2009년 4월 29일부터 발효

○ 수입제품 포함, 러시아 연방 내에서 유통되는 야채 및 과일 주스에 대한 규정 명시

- 야채 및 과일 주스의 생산, 보관, 운송 및 판매 과정에 대해 규정

□ 담배 제품에 관한 기술규정에 대한 연방법

○ 도입시기 : 2009년 12월 26일부터 발효

○ 러시아 연방 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정 명시

- 담배 제품의 정의와 연방법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규칙 및 형식 등 명시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상품안전 기술규정에 대한 연방법

○ 도입시기 : 2011년 4월 이내 발효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상품안전에 대한 규정 명시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생활과 건강 보호가 목적
- 장난감, 의류, 섬유제품, 유모차, 자전거, 출판물(교과서, 서적, 잡지)에 대한 규정 명시
- 의료목적의 상품, 이유식, 향수 및 화장품, 스포츠 용품 및 장비, 가구, 노트 등은 규정 대상에서 제외

□ 이 밖에 20개 이상의 새로운 인증규정이 제정 중이며, 농산품에 대한 수의검역 규정 개정이 추진 중

○ 독감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멕시코, 영국, 스페인, 캐나다 등으로부터의 육류 수입금지 규정 제정 추진

○ 농산품에 대한 인증규정 강화는 농산품 수입제한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러시아의 농업지원 정책으로 작용

2. 인증제도의 향후 전망

□ 인증제도 중 다수가 서방(특히, EU)에서 도입

○ 일부 제품의 경우, 러시아 내에서의 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EU에서 정한 테스트 외에 추가적인 테스트를 요구

[예 : 러시아와 EU의 인증 테스트 비교]

구 분	러시아	EU
장난감	포름알데히드 및 페놀 성분 검사 포함	포름알데히드 및 페놀 성분 검사 불포함
변압기	-40℃에서 테스트	냉각조건에서 2차례 테스트
강철 파이프	100% 샘플 테스트	10~20% 샘플 테스트

□ 현재의 강제인증 제도는 2011년까지 새로운 규정으로 교체될 예정

○ 대부분의 러시아 연방 규격들은 구 소련시절 이후 재검토가 미비

○ 약 50만 개의 현행 국가규격(GOST)이 1,000여 개의 기술규정으로 대체될 예정

□ WTO 가입을 위해 기술규정을 국제관행에 맞게 수정 예정

○ 국제관행과 러시아 기술규정의 일치는 러시아의 WTO 가입조건 중 하나로서, WTO 기준에 맞게 기술규정 수정 추진

- 엘리베이터 안전
- 와인
- 포장 안전
- 건축 안전
- 바퀴 운송수단 안전
- 기계 및 장비 안전
- 비생산적 동물에 대한 사육과 음식 첨가물
- 무기·탄약 관련 민간 서비스
- 가스연료 사용 장치 안전
- 운행 자동차 안전
- 깨지기 쉬운 운송에 대한 자동차 안전
- 자동차 운송의 위험한 선적에 대한 안전
- 전차 또는 전동버스 운영 안전
- 민간 보호장비 안전
- 화학제품 안전
- 저전압 설비 안전
- 러시아 고체 쓰레기 소각시설의 디자인, 건축, 운영에 대한 생태적 안전
- 천연 또는 산업 위험으로부터 주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 요건

Ⅵ. 성공 및 실패 사례

국산 의료기기(A.I.Lap -Advanced Imaging Laboratory)
○ 2006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 바이어들로부터 구매의사 확인 - 러시아 인증이 없어 즉각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인증 취득 후 상담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한국 컨설팅 업체에 GOST 인증을 의뢰하였으나, 컨설팅 업체가 인증을 위임한 러시아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해 수개월의 시간을 허비 - 시행착오 끝에 2007년 11월 GOST 인증 발급, 2008년 320만 달러 수출 성약 달성

중국산 장난감
○ 중국산 플라스틱 장난감의 50% 이상에서 기준치 보다 높은 Toxic Level이 검출 ○ 2004년, 인증 부재 및 위생 요건 비충족으로 타타르스탄과 러시아 내의 중국산 플라스틱 장난감 판매금지 조치 ○ 2008년 4월, 세관 신고 시 가짜 인증서를 사용, 노보로시스크에서 러시아 밀반입을 시도했으나 발각 ○ 노보로시스크와 크라스노다르에서 대규모 선적물품 압수, 밀수업자들에 대한 법적제재 단행

녹 차
○ 2000년, The First Military Medical Academy라는 지역기업이 판매하던 녹차에 대해 유통기한인 2년을 훨씬 넘긴 5년된 제품이었다는 이유로 Omsk 인증센터가 인증 거절 ○ 인증 미취득으로 인해 녹차 판매가 금지되고 폐업 조치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09-004	美 경기부양법인 분석 및 활용전략	2009.2
09-005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2009.3
09-006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2009.4
09-007	2009 美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09.4
09-008	미·중·일 그린뉴딜 정책	2009.4
09-009	금융위기속 CIS 진출 기업 및 바이어 동향	2009.4
09-010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아프리카 - 중국, 일본, 인도의 진출현황 및 시사점 -	2009.4
09-011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현지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2009.5
09-012	인도 신정부의 경제통상방향과 전망	2009.6
09-01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동향	2009.8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09-002	중동의 5대 비즈니스 유망 분야	2009.2
09-003	한-호주, 뉴질랜드 BT산업 협력방안	2009.3
09-004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	2009.3
09-005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를 읽어라	2009.3
09-006	일본 소비재 유망상품 및 수출방안	2009.3
09-007	새롭게 주목받는 美 흑인시장	2009.3
09-008	아프리카 전력시장 ON - 전력산업 현황과 진출 방안	2009.3
09-009	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 포인트	2009.3
09-010	세계 전자산업 및 시장의 재편과 우리기업에의 기회	2009.4
09-011	동남아 CDM 시장현황과 기회	2009.4
09-012	중동에 펼쳐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 그린산업현황과 기회	2009.4
09-013	해외 LED 5大 시장 진출전략	2009.5
09-014	인도 소매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9.5
09-015	미국의 쿠바 제재조치 완화와 한-쿠바 교역	2009.5
09-016	아세안 휩쓰는 '경제한류'	2009.5
09-017	자동차 부품의 틈새시장, 중동·북아프리카를 가다	2009.5
09-018	미국 新성장 전자부품 시장동향	2009.5
09-019	세계시장을 누비는 한국의 강소제품들	2009.7
09-020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인터넷 홍보 핵심 포인트	2009.7
09-021	중남미 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	2009.7
09-022	동남아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따른 한국기업 참여 기회	2009.7
09-023	한국 제품의 중국내 브랜드 인지도 이렇게 높여라	2009.7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23	한국 제품의 중국내 브랜드 인지도 이렇게 높여라	2009.7
09-024	자동차 부품의 틈새시장, CIS를 가다	2009.7
09-025	중동은 이런 의료기기를 원한다	2009.7
09-026	글로벌기업을 누른 신흥시장 토종기업의 성공 전략	2009.7
09-027	한-EU FTA 수출유망품목 및 활용방안	2009.7
09-028	한-인도 CEPA 이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9.8
09-029	해외 주요국 자전거 산업정책 및 시장동향	2009.8
09-030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 한중일 수출품목 경쟁 동향	2009.8
09-031	동남아 전력 기자재 시장현황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09.8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글로벌 수출시장의 5대 트렌드	2009.1
09-002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2009.2
09-003	동유럽 금융위기와 진출기업 동향	2009.3
09-004	경기침체기 글로벌 기업의 구매정책 변화	2009.3
09-005	세계 유명기업의 그린마케팅	2009.3
09-006	원화약세에 따른 대중수출 영향 및 전망	2009.3
09-007	중동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시장동향 및 시사점	2009.4
09-008	美 크라이슬러 파산보호신청과 국내업계 영향	2009.5
09-009	해외시장에서의 한일 수출품목 경쟁동향	2009.5
09-010	동유럽 금융위기 이후 현지시장 점검	2009.6
09-011	미 GM 파산보호신청과 국내업계영향	2009.6
09-012	영국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점검	2009.6
09-013	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녹색기술	2009.6
09-014	'Buy China' 지침의 배경과 영향	2009.6
09-015	중국 내수소비 뜨는 제품 - 화장품, 침구용품,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벽지, 도료, 식품포장기계 -	2009.6
09-016	한-EU FTA 10大 수출유망품목	2009.7
09-017	온두라스 쿠데타와 우리 수출 및 현지진출 기업	2009.7
09-018	2009년 타겟시장, 3중시장 현황과 전망	2009.7
09-019	중국 부동산 시장 어디로?	2009.8
09-020	일본 총선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2009.8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져보트산업 조사	2009.1
09-004	2009년 지역별 수출유망상품	2009.2
09-005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2009.2
09-006	2009 외국인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	2009.3
09-007	러시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2009.3
09-008	CEO . HR マネージャー向けの主要勞働判例集 (2008年改訂版)	2009.3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9	중국 내수유통 경영실무 가이드	2009.4
09-010	그린허브코리아 주간 2009 종합결과보고서	2009.5
09-011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유럽편	2009.5
09-012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미주편	2009.5
09-013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아시아편	2009.5
09-014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09.5
09-015	해외 주요국 LED 시장동향	2009.5
09-016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09.6
09-017	법령으로보는 중국 노무관리실무가이드	2009.6
09-018	200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8)	2009.6
09-019	200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09.6
09-020	200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9.6
09-021	Post-China 투자진출 유망국 투자여건	2009.7
09-022	주요 선진국 녹색에너지 기술동향	2009.7
09-023	전세계 비철금속 생산현황 및 글로벌소싱 활성화 방안	2009.7
09-024	중국 주요 시장 프랜차이즈산업 상권 분석 및 진출방안	2009.8
09-025	한눈에 들어오는 중국 유통지도 2010	2009.9
09-026	유럽 온라인 유통점 진출 가이드	2009.8
09-027	협력유망 유럽 신재생에너지 기업정보	2009.8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	2009.2
09-007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9.2
09-008	미-중-일 그린 비즈니스를 잡아라	2009.4
09-009	일본기업 부품소재 구매전략 설명회	2009.4
09-010	중국 내수시장을 제대로 뚫기 위한 성공조건과 공략방법	2009.4
09-011	중국 부품소재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2009.6
09-012	미국 자동차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2009.6
09-013	유럽 자동차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아시아 주요 완성차 구매전략	2009.6
09-014	CIS 주요국 시장변화와 진출전략	2009.6
09-015	중국 내수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노무·세무 핵심 포인트	2009.6
09-016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설명회	2009.6
09-017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사업기회	2009.6
09-018	중동 신성장산업 진출 설명회	2009.6

작성자

◈ 모스크바 KBC 장윤성 과장
◈ 중아CIS팀 송혜숙

Global Business Report 09-032

심층분석, 러시아의 인증제도
-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도와 향후 전망 -

발 행 인 ▌ 조 환 익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9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